

知(的)所(有)權(紛)爭(事)例

著作權使用料와 一括許諾方式

—美ASCAP對CBS事件—

<1979年 4月 17日, 美聯邦最高裁 判決>

1. 原告: CBS
2. 被告: ASCAP·BMI
3. 事件概要

美國에는 1914년에 設立된 ASCAP(作曲者作詞者出版者美國協會)라는 音樂著作權協會가 있으며 同協會는 會員(22,000名)으로부터 著作物의 演劇을 除外한 경우의 演奏權의 使用許諾에 對한 權利를 受任하여 使用者로부터 徵求한 著作權使用料를 分配하게 된다.

한편 1934년에 設立한 BMI(演奏權協會放送音樂)는 ASCAP가 放送事業者의 使用료를 引上하려 하자 全國라디오業者들이 設立한 放送業構成員所有 公益法人으로서 1,000名의 出版業者와 20,000名의 作家들이 회원이 되어 있으며 ASCAP와 거의 같은 方式으로 運營하고 있다.

ASCAP는 300萬, BMI는 100萬의 레파토리를 갖고 있으며 美國에 著作權이 있는 音樂著作物의 大部分을 이 2個 團體에서 操作하고 있는 實情이다.

音樂著作權使用許諾은 一括許諾方式과 編成別許諾이 있는데 前者는 管理樂曲 全部에 대

한 허락으로서 全收入의 一定率을 支拂하고 後者는 單一特定演奏管理樂曲의 使用許諾으로서 各演奏時마다 使用료를 徵收하게 된다.

한편 CBS는 兩團體로부터 네트워킹으로서 1940年代 後半부터 계속하여 一括許諾方式契約을 締結하고 實施許諾을 받아 오다가 1969年 CBS는 ASCAP와 BMI가 음악저작권을 獨占하는 違法獨占組織이며 一括許諾方式은 違法된 價格固定일 뿐 아니라 結託決定, 共同去來拒否, 著作權濫用이라 하여 獨占禁止및 著作權法違反을 내걸고 뉴욕南地裁(地法)에 提訴하였다.

4. 判決要旨

뉴욕南地法은 1972年 이같은 慣行은 條理의 原則適用範圍에 들지 않는다고 判斷하였고 1975年에는 CBS의 主張에 對해서 放送局등 使用者는 個個의 著作權所有者와 直接交渉도 可能하므로 不當한 去來制限, 違法結託行爲, 著作權濫用 혹은 獨占은 아니라고 再判決하였다.

이에 對해 CBS는 이에 不服하여 上訴하였으며 抗訴裁判所

(高法)는 1977年에 CBS의 勝訴를 판결하였다. 判決理由는 TV網에 對하여 허락하는 一括許諾方式은 獨禁法下에서는 그 自體가 위법한 가격고정의 1形態라는 것이다.

따라서 同判決은 地法判決의 破棄와 適切한 救濟方法이 審議되게끔 選送을 命命하는 것이 된다.

이에 따라 ASCAP와 BMI는 事件移送命命을 請願하였다.

이 청원에 따라 聯邦最高裁는 獨禁法과 著作權法上 이 問題는 重要하다 하여 事件移送命命을 認可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聯邦最高裁는 高法이 判示한 一括許諾方式은 그 自體가 위법이라는 結論에는 同意하지 않고 條理의 原則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이유로 抗訴判決을 破棄하고 選送處分하였다.

註: ASCAP는 American Society of Composers, Authors and Publishers의 준말이고 BMI는 Broadcast Music Inc.이다.